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증명서류 발급절차에 관한 규칙

제정 2020. 03. 10.
전부개정 2020. 09. 29.
개정 2021. 07.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서류를 발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이하 “종사경력 증명서”라 한다)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를 말한다.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교육 이수 확인서”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종합정보시스템”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2조제1항의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이하 “확인단체”라 한다)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

제3조(종사경력 증명서 발급신청) ①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인은 한국

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2. 신청서에 기재한 각 종사경력사항을 증빙하기 위한 별표1의 서류 중 복수의 서류
- ② 종사경력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방문 신청
 2.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이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신청 절차의 완료로써 제1항제1호의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종사경력 증명서 신청접수) 진흥원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출서류 검토) ① 진흥원은 제3조제1항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진흥원은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기한은 7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③ 진흥원은 제2항의 보완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파기한다.

제6조(종사경력 확인요청) ① 진흥원은 제5조에 따라 검토가 완료된 제출서류를 접수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인단체에 발송하여 신청인의 종사경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발송 시, 제5조제1항의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 진흥원은 확인단체에 기한을 정하여 회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신기한은 7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단체 확인) ① 확인단체는 신청인의 종사경력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제26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기한 내에 진흥원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 확인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사경력 확인 결과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종사경력 확인서
2. 확인위원회 회의록

제8조(확인비용 납부) ①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인은 확인단체에 대하여 별표2에 따른 확인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확인수수료 수납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제1항의 확인수수료를 신청인을 대신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확인단체에 대하여 종사경력 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확인결과 검토) ① 진흥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확인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단체에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확인 요청 시, 진흥원과 확인단체는 제6조와 제7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10조(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등) ① 진흥원은 제9조제1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이 결정된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종사경력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8조 제1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종사경력 증명서 신청 반려가 결정된 신청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제출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발급 또는 제2항의 통보는 제7조 제1항의 확인단체의 확인

결과를 회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종사경력 증명서 변경발급 신청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사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성명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청서

2.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② 종사경력 증명서의 변경발급 신청의 방법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종사경력 증명서의 변경발급이 결정된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종사경력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21.7.16>

제3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교육 이수 확인서

제11조(운영) 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이수 확인서 발급) 진흥원은 제11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1.7.16>

제12조의2(이수 확인서 변경발급 신청 등) 제12조에 따라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성명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0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21.7.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3조제1항제2호의 제출서류

※ 하단의 내용은 제출 가능한 서류의 예시이며, 종사경력 증명을 위한 서류의 종류와 범위는 제한이 없음

① 종사한 업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 이상

- 가. 종사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명
- 나. 종사한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 다.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 등)
- 다. 외국 정부가 발급한 종사업체 증빙서류(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발급사실 확인서류 첨부)
- 라.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서류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로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중 어느 하나 이상

- 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어느 하나
- 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다. 종사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확인이 가능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득증명서류
- 라. 매니지먼트를 통한 수익 발생 사실 확인이 가능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득증명서류
- 마. 외국정부가 발급한 소득증명서류(대한민국 재외공관의 발급사실 확인서류 첨부)
- 바.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서류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업무를 하였음을 증빙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 이상

- 가. 소속 또는 매니지먼트 한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기사, 영화·드라마·음반 크레딧 등
- 나. 소속 또는 매니지먼트 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전속계약서, 출연계약서 등
- 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업무를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 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구두계약확인서
- 마.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서류

※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한다.

※ 외국에서의 종사경력 증빙을 위한 외국어 기재 서류는 번역공증서류가 함께 첨부되어야 함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2015.07.29.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종사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별표2>

제8조제1항의 확인수수료

금액
25,000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아래의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인 적 사 항						
사진 (2.5×3)	성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자택주소	(우 :)				

종 사 경 력 사 항				
연번	종사기간	종사개월 수	종사업체명	담당업무
1	~	()개월		
2	~	()개월		
3	~	()개월		
4	~	()개월		
5	~	()개월		
총 종사개월 수		()개월		

확 인 단 체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 붙임 : 각 종사경력별 증빙서류

유의사항
○ 인적사항 및 종사경력사항은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향후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각 종사경력별 증빙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 시, 확인비용 25,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후 증빙서류 미비에 따른 서류보완 시,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시: 준영구 ·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반려 시 :즉시 파기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종사경력사항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2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운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8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신청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소득증명서류 확인서) 발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 신청인의 경력을 확인하는 확인단체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교육 위탁기관
-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위탁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확인지정단체 : 신청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
- 법정교육 위탁기관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교육 운영
- 실태조사 위탁기관 :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실시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확인지정단체: 신청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 후 즉시 파기
- 법정교육 및 실태조사 위탁기관: 이용 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 시 파기

4.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 및 법정교육 이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 신청 위임장

위 임 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수 임 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소득서류 확인서) 발급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 . . .

위임인 : (인감날인)

※ 붙임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유의사항
○ 위임인 및 수임인의 인적사항은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향후 제출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u>신청서의 (서명 또는 인)</u>은 위임인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u>수임인의 신분증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u>를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시 : 준영구
-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반려 시 : 즉시 파기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목적

- 위임인(신청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에 대한 수임사실 확인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신청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임인(신청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 . .

수임인 : (서명 또는 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구두계약 확인서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대중문화 예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0년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목적 : 구두계약 여부 확인 및 증명서 발급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대중문화예술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구두계약 주요내용				
계약기간	~			
계약내용				
신청인의 담당업무				

신청인과 대중문화예술인은 위 구두계약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구두계약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중문화예술인 :

(인감날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붙임 1. 대중문화예술인 인감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2. 위 계약기간 중 신청인의 담당업무 증빙자료

유의사항

- 구두계약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 인감증명서의 원본제출을 위하여 반드시 방문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증명서류 변경발급 신청서

※ 아래의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	-----

인 적 사 항					
성명				휴대전화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자택주소	(우 :)				

변경발급 대상 증명서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교육 이수확인서	☐

* 변경발급을 원하시는 증명서류에 체크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변 경 사 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증빙서류
성명			주민등록초본
기타()			

위와 같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증명서류의 변경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 붙임 : 변경사항 관련 증빙서류

유의사항
○ 인적사항 및 변경사항은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향후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각 변경사항별 증빙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후 증빙서류 미비에 따른 서류보완 시,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준영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변경사항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2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운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8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신청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증명서류 변경발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교육 위탁기관
-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위탁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법정교육 위탁기관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교육 운영
- 실태조사 위탁기관 :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실시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 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 시 파기

4.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변경사항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법정교육 이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서 접수대장

No.	접수일자	접수방법	신청인		대리인		접수자	비고
			성명	본인 확인	성명	본인 확인		

※ “접수방법” 란에는 “방문” 또는 “온라인” 을 기재

※ 접수자는 방문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인감증명서)으로 본인확인을 마친 후 “본인확인” 란에 체크표시(V)

※ 온라인 신청인은 본인확인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인확인” 란에 체크표시(V)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서

□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종사경력 확인사항

연번	종사업체명	종사경력 확인기간	종사개월 수
1		~	() 개월
2		~	() 개월
3		~	() 개월
4		~	() 개월
5		~	() 개월
총 종사경력 인정기간		() 개월	

비 고
※ 종사경력 확인사항 중 특이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사경력 확인기간에서 제외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_____ 단체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

1. 발 급 번 호 : 제 호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종사경력기간 : 24개월 이상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인

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연락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교육 이수확인서

1. 발 급 번 호 : 제 호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상기인은 위와 같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인

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연락처: